

공 고

대한요트협회 제18대 회장 보궐 선거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회장 후보자 등록기간

- 2018년 5월 8일(화) ~ 2018년 5월 9일(수) 09:00~18:00 (2일간)

2. 회장 후보자 등록 공고

- 2018년 5월 10일(목) 대한요트협회 홈페이지

3. 선거운동 기간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9조)

- 2018년 5월 10일(목) ~ 5월 16일(수)
- 선거일에 소견발표 가능.

4. 회장 선거일 (소견발표, 투표 및 개표)

- 일 시 : 2018년 5월 17일(목) 14:00 ~ 17:00

- 후보자 소견발표: 14:00 ~
- 투표: 소견발표 종료 후 ~ 16:00
- 개표: 16:00 ~ 17:00

※상기 세부일정은 당일 상황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장 소 : 올림픽파크텔 3층 회의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2018년 5월 3일

대한요트협회
회장선거관리위원장

대한요트협회 회장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안내

대한요트협회 회장 보궐 선거 후보자 등록에 따른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계자분들께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1) 서면 제출
- 2) 회장 후보자 등록기간
2018년 5월 8일(화)~5월 9일(수) 09:00~18:00 (2일간) (서류도착 기준)
- 3) 신청서 제출처
대한요트협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 접수처 (전화: 02-420-4390)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501호

□ 제출서류

- 1)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2) 이력서 1부 (별도 양식 없음)
-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 4) 주민등록초본 1부
- 5)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
- 6)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문서)
- 7) 기탁금 입금표 (대한요트협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12조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 발행 입금표)
- 8) 퇴임 증명서 (협회의 임원이었던 경우에 한함)
-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 10)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탁금 액수 및 입금 계좌 정보

- 1) 금 액 : 일금 이천만(20,000,000)원
- 2) 입금계좌정보
 - 은행명 : 수협은행
 - 계좌번호 : 1010-1201-2313
 - 예금주 : 대한요트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2조(기탁금)

-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2천만원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기탁금의 납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임원의 결격 사유

1. 대한요트협회 정관 제26조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0.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다만, 승부조작, 편파판정, 폭력·성폭력, 횡령·배임의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1. 국회의원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는 해당자로부터 협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협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